

의안 번호	2425	[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]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. 5. 30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5. 30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6. 10.(화)

2. 제안이유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자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 의무와 심의위원회 내실 운영을 명시화하여 기금 관리·운용 합리성을 높이고,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근거 상위 법령 명시(안 제1조)
- 나. 운용자금에 대한 효율적 운용·관리 의무 명시(안 제5조)
 - 통합기금 재원의 공공성·수익성을 고려하여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관리 의무 명시
- 다. 위원회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예치현황 관리 강화(안 제7조)
 - 심의사항 추가 및 금고 세부 예치현황(계좌번호, 이자율 등) 작성 보고
 - 위원회의 활동 내역 관리 의무화
- 라.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연장(안 제9조)
 - 현행 2025년 6월 30일에서 2030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연장
- 마.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4조, 안 제6조, 안 제8조)

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, 제16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자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 의무와 심의위원회 내실 운영을 명시화하여 기금 관리·운용 합리성을 높이고,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전반적으로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근거법규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- 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**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